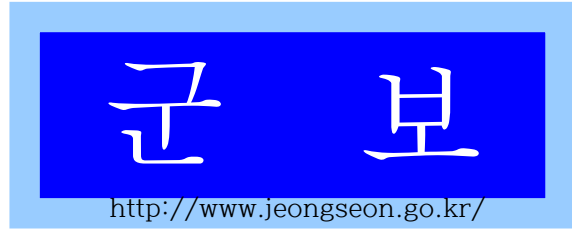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0호 2019. 7. 31.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26호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2
- 정선군 조례 제2727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4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19호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등 일괄폐지규칙.....12
- 정선군 규칙 제1320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규칙.....14
- 정선군 규칙 제1321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4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55회 정선군의회(2019. 07.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26호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

제1조(「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의 폐지)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의 폐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만료된 조례 폐지(안 제1조)

-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안 제2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

제255회 정선군의회(2019. 07.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27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4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30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총 공용면적 x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면적 x{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 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자” 를 “농업인” 으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 ⑤ (생략) ⑥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⑦ ~ ⑨ (생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및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 재산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	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27조(대부료의 효율) ① ~ ③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7조(대부료의 효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 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생략)

⑤ · ⑥ (생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략)

②제1항에서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1.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5. -----
----- 영 제29조제1항제13호-----

6.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④-----
----- 감정평가업자-----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신 설>

⑤ (생 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생 략)

<신 설>

제39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총 공용면적 x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면적 x{(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u>자</u>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 8. (생 략) ② (생 략) <u>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u>	----- <u>농업인</u>----- -----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 제안이유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개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과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안 제4조제6항)
- 나. 일정 면적·가격 요건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삭제(안 제4조의2)
- 다. 농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상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요건 구체화(안 제27조제4항제1호)
-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 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조항 삭제(안 제27조4항제2호)
-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 제13호로 변경(안 제27조제4항제5호)
- 바. 토석채취료 산정 시, 관련규정에 맞추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감정 평가액으로 시가적용하고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요건을 완화(안 제29조제2항·제4항)
- 사. 건물대부료 부과·징수 시 건물 및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산식의 명확화(안 제30조제4항)
- 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31조제6항)
- 자. 수익계약 매각 사유 중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요건 구체화(안 제39조제1항제3호)

규 칙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등 일괄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19호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등 일괄폐지규칙

제1조(「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의 폐지)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2조(「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정선군향토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의 폐지) 정선군향토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규칙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 조례 폐지로 불필요해진 규칙 폐지(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정선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정선군향토박물관운영조례 시행규칙」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20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준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 사무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 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신고·납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4항의 직접 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 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최근 1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의 대상자)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검증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군수가 우수 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선정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거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포상 받은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군수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

사

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

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30조(조사계획수립)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압 수 · 영 치 증

법 인 명(상 호) :

소 재 지(사업장) :

대 표 자(성 명) :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증

상 호(법인명) :

주 소(소재지) :

성 명(대표자) :

위 사람(업체)에 대한 지방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7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관						
예치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 거부 부기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증)

	법인유형	주요 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제조업 () 건설업 () 판매업 () 운송업 () 기 타 ()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

297mm×210mm[보존(2종)70g/ m²)]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 [예: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치)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정선군 전체분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우편번호 : 26131

※ 문의사항 전화 : (033) 000-0000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그 밖의 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신고 명세서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명세서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등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 출 세 액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92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명	
------	--	---------	--	------	--

(단위 : 원)

구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세 액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

297mm×210mm[보존(2종)70g/m²]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신고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 초과
1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과세제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과세제외 내역 : 제외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산출세액 : 과세면적 × 250원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
으로 산정 (예: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 이사 등)
- ④ 공제액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감면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 ⑤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④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 2016. 1. 1.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 대상 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35,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100을 곱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산정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시·군 소재 사업장)

< 사업연도 : ,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③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금														
	부담금														
	④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⑤=③-④															
④공제액 (④)															
급여지급일															
⑤산출세액 ⑥=[⑤-④]×(5/10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mm×210mm[보존(2종)70g/㎡]

[별표]

(1면)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모든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고 담보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세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해석하거나 과세요건 존부 등 사실판단을 하는 경우 심도 있고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과세처분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보여준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권리보호요청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어떠한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의로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면)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5) 납세자가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계속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조사공무원은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확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즉시 직상급자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0)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에 제출받은 조사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반환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적출 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조사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권리구제절차(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76조 ~ 제86조(세무조사 관련조항)의 규정 신설·개정(2018.12.2. 4.)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칙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방식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기준 마련(안 제11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다. 부분 세무조사의 근거 신설(안 제13조)

- 필요한 부분만 특정,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한 시작일 10일 → 15일 전으로 연장(안 제21조)

마.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현장 교부 등 의무 부여(안 제34조)

바. 세무조사결과 확정 후 7일 이내에 통지 명확화(안 제38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21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를 “사람(하”로, “한다)가”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업자”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 중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4호, 별지 제2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별지 제22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 ³)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또는 감정평가업자		m ³ 당 단가 (B)	금액 (A×B)	
								〇〇단체	〇〇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감정평가업자)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 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생 략)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 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1. ~ 7. (생 략) ③ (생 략)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현 행과 같음) ②----- ----- 사람(하----- -- 한다)이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생 략)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 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 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 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 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그 밖에 -- -----.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4조(관리책임) ①·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의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에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 제4조제2항에 따라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7조(감수인의 지정) -----
-- 제4조제6항에 따라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정선군 공유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
정 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
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
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 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

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
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

----- 제5조제2항에 따라 -----

제12조(매각신청) -----

제14조(교환) -----

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
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가격평정) ① (생략)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
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
를 붙여야 한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
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
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
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
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
재하 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제16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감
정평가업자-----
----- 그 밖에 -----
-----.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그 밖-----
-----.

②-----

----- 제1
항에 따라 -----

-----.

1. ~ 5. (생 략)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사
업소 읍·면의 장은 균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
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
리관이 균유재산의 신축·증축
·개축·이축·철거·이전 또
는 모 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
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19조(매수신청)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

②----- 제1항에 따른

-----.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제1항에 따라 ----

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생 략)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생 략)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법"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③-----

에 따라 -----

-----.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② (생략)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균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사업소 및 읍·면장은 균유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②-----
---- 제1항에 따라 -----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

④-- 제3조에 따라 -----

-----.

제31조(가격평정조서) --- 제29조제3항에 따라 -----

-.

제33조(청사의 관리) -- 제44조에 따라 -----
-----.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 제50조에 따라 -----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②-- 제53조에 따라 -----

--.

③제1항에 따라 -----

-----.

☐ 제안이유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의 불부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업자 진입 제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반영(안 16조제2항, 제31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예외사항 제외(안 28조제1호)